

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의 구입·관리·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, 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고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, 조례안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?
- 답 : 박문과 명칭을 “고성군 고성탈 박물관” 을 “고성군 고성 갈촌탈 박물관” 으로 할 것과 명예관장에 대한 명확한 예우가 없으며, 공립박물관인 고성탈박물관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기증한 탈을 기증자에게 환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
- 문 : 박물관 명칭을 탈 기증자의 뜻과 고성탈은 갈촌탈로 이미 홍보된 점을 고려하여 고성 갈촌탈박물관으로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?
- 답 : 탈 기증자 이도열씨를 관장으로 위촉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예우하고 박물관 명칭은 공립박물관 취지를 살려 고성탈박물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- 문 : 조례안 제21조 “제1항 내지 제5항” 을 “제2항 내지 제6항” 으로 하고 동조 본문 내용앞에 제1항을 신설하며, 제24조 제1항 중 “과반수의 출석” 을 “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” 으로 조문의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?
- 답 : 예, 잘 알겠습니다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5. 12. 12 조례안 제21조 “제1항 내지 제5항” 을 “제2항 내지 제6항” 으로 하고, 동조 본문 내용앞에 제1항을 신설하며, 제24조 제1항 중 “과반수의 출석” 을 “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” 으로 자구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